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효과적으로 적발함과 동시에, 담합 가담자 간 불신을 조장하여 담합 형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시장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생활 및 국가재정에 피해를 끼치는 담합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반복적 담합 사업자 등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기준을 합리화하여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도, 자진신고 유인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사개시 전·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수준 차등화

조사개시 후 1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수준을 면제에서 100분의 75 감경으로 변경하여 조사 개시 전 신고 유인을 제고함(안 제51조제1항제2호).

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 강화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대상을 종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안 제51조제2항제2호),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자 또는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되는 과징금 금액을 100분의 50으로 축소하도록 함(안 제51조제3항).

다. 반복 담합 사업자 판단 기준 개선

법 제44조제2항, 시행령 개정안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을 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23. ~ 11. 2.)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과징금을 면제하고”를 “과징금의 100분의 75를 감경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44조제2항 또는 이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되는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감경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새롭게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

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새롭게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④ 법 제44조제2항 또는 이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제한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감면 신청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 작한 후에 법 제44조제1항제2 호에 따라 조사등에 협조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과징금</u> <u>을 면제하고</u> , 시정조치를 감경 하거나 면제한다.	2. ----- ----- ----- ----- <u>과징금</u> <u>의 100분의 75를 감경하고</u>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 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 는다.	②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u> <u>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u>	2. <u>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u> <u>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u>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신 설>

<신 설>

령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
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법 제
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법 제44조제2항 또는
이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되는 과징
금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만을 감경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
령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 또
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
부터 10년 이내에 새롭게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정
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
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
는 면제받은 날부터 10년 이
내에 새롭게 법 제40조제1항
을 위반하는 경우

④ 법 제44조제2항 또는 이 조

③ ~ ⑥ (생략)	<u>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제한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u> ⑤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330